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전문회사 제도 신설)

金永奭 / 극동·영건축사사무소 대표

1987년 10월 24일 제정 공포된 건설기술 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약칭함)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건기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대하고 보니 작년 11월 27일 건축사 협회 제22회 정기 총회시 건기법을 통과시킨 협회 집행부와 이를 반대한 대의원간의 舌戰이 눈앞에 떠오르며, 결국 올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동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안 제40조(시공감리자의 자격등)을 보면 건축부문의 감리전문 회사의 기술 인력중에 시공 기술사와 더불어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듯 시행령안에서 건축사의 갑작스런 출현은 모범인 건기법에서 보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이미 제정된 건기법 제40조에는 “이 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조의 공사감리자로서의 건축사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한것이라든지 또 건기법 제2조에 명시되었듯이 건기법의 적용 대상인 동시에 그 주체로서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건설 기술자”라고 정의할 뿐, 건축사의 위치나 역할등의 정의를 나타내는 조항이나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공 감리자의 자격으로서 건기법에 전혀 없었던 시행령안에서의 건축사의 포함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이미 마련된 건축사의 감리 업무제도에 비추어 볼때 자못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리 전문회사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법 자체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과연 법제처의 눈길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즉흥적인 조치로 건기법을 제정함으로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2,700여 건축사 사무소의 고유 업무 침해라는 면에서 강한 반발을 나타냈던 건축사의 감리업무 영역을 뒤늦게 의식한 결과 이에 대한 무마책으로써 반영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비록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반영 했다고는 하나 역시 법률 상호간의 중복성, 적용문제, 배타성등의 법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단 시행령안은 제쳐두고라도 모법인 건기법에 대해 이미 법률로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제13대 국회에서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건축부문의 공사감리에 대한 부문은 이미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마련돼 있는바, 건기법에서 새로 다루어질 필요도 없거니와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마련돼 있는바, 건기법에서 새로 다루어질 필요도 없거니와 만일 그렇게 됨으로써 야기될 감리업무의 二元化에 따른 혼란등으로 볼때 건기법에서의 건축에 대한 감리 전문회사 제도는 당연히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있어서 기히 감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건축사를 끌어 들여서까지 구태여 감리 전문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기법이 기존 감리 제도가 없었던 토목 또는 기타 공사 부문에 감리 전문 회사의 필요성을 느껴서라면 몰라도 건축 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기존 건축법 및 건축사법 테두리안에서의 보완 또는 개선이 보다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새기구, 새 제도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타당하리라고 본다.

만일, 건기법이 시공적 측면에서의 감리를 중시 여겨 감리 전문회사의 설립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건축사의 기존 감리업무에 시공 기술사의 기술적 참여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례로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듯이 말이다.

다음으로, 건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즉 설계 당사자는 감리 업무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민간공사이건,

◆

金永奭

33년 경남생으로 58년 부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72년~현재까지 극동·영건축사사무소를 자영하고 있으며, 본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간사로 재직중이다.

건축사자는 영원한 우리의 기록이며 유일한 홍보매체 입니다.

정부 발주의 공공 공사이건간에 또 그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건, 규모이하이던간에 설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비록 같은 자격의 건축사 일지라도)이나, 기구에 의해 설계자가 감리 업무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은 그 제도나 기구를 만든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유에서건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계와 감리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건축물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사의 창조적인 예술 감각과 전문지식 및 경험에 의해 창작 설계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의해 건축물은 시공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서 조형적 예술 작품이 생성되는 것이다. 감리 업무는 바로 이러한 건축물의 생성 과정에서 건축사가 설계에서 자기가 의도한 바와 시공과의 합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자기 작품 의도를 설계에 충분히 표현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창작 예술의 본질, 즉 작품의 분위기나 마무리 등의 변화를 감리 업무 중에서 건축사가 계속수정 시행해야만 하는 설계 업무의 계속적인 연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 당사자의 감리 업무의 제외는 동서고금에 없는 상식적 밖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감리 제도가 궁극적으로 시공 과정을 위한 것이지만 시공자가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감리 역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간의 건축물의 대형 사고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적지 않게 시공자의 체제와 영리 목적에 급급한 나머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감리 이전에 앞서 시공 회사에 있어서의 자본은 물론, 제도상의 기술자 확보 및 육성으로 기술자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로써 지금까지의 건설 회사에서 벗어나 시공상의 영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면 책임시공 회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라 본다. 이상에서와 같이 건기법에 나타난 건축 감리 전문회사 제도는, 첫째, 건기법 시행령에서 건축사의 포함으로 인하여 모법상의 모순을 담고 있으며(모법과는 이율배반적이다) 둘째, 감리 제도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과 건기법과의 중복성에 따른 감리 업무의 이원화(二元化)로 인하여 혼란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

셋째, 건기법은 감리 과정에서 설계 당사를 제외 시키므로써 감리 업무가 설계업무와 구분되어질 수 없는 엄연한 설계업무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넷째, 감리 전문회사와 같이 감리기구의 중설로 인한 건축주의 재정적 원가 부담만을 가중 시킬 것이고, 다섯째, 시공 회사의 책임한계와 전면 시공 감리회사의 책임등의 이중적 구조의 마찰 또한 문제점으로도 야기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행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명시된 건축사의 기본권 및 기본업무를 제한 침해하기보다는 현존 건축사 사무소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세재탕감 조치와 현장 상주 감리 제도를 두고 여기에 대한 대가 조정이 따름으로서 영세한 건축사 사무소 육성이야말로 국가 만년 대개를 위해 마땅할 것이며, 또한 건기법 시행령에 앞서 모법의 건축 부문에 대한 감리 전문회사 제도가 당연히 삭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타율에 의한 것보다는 자율에 의한 건축사 활동의 육성이 건축 문화의 진정한 발전이요, 시대적 사명임을 당국과 협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 회원작품모집

회원 여러분의 热과 誠의 結晶體인 회원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 작품 제출시는 인쇄원고용 슬라이드 필름, 잉크된 도면, 설계개요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하며 생각하며 원고모집

- 회원업무와 관련된 좋은 일 나쁜일
 - 관계법과 연관된 각종 의견
 - 협회에 대한 의견
 - 건축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
 -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
- 〈紙上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길을 모색합시다 / 원고길이 : 200자 원고지 10매정도〉

□ 그밖의 원고도 부탁합니다.

- 건축기행문
 - 각종문예원고(수필, 꿈트 등)
 - 논문, 자료 등
- 〈태마에 제한없습니다.〉

문의 및 보낼곳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603-55
전화 : 581-5711~4

※ 本誌에掲載하는會員의主張이나研究論文은本協會의意見을代表하오니 또는論文일경우論文認準次元의权威를賦與하거나其他想定할수있는諸權益등에 대해서本協會가公의으로立案하는 뜻이 있는것이 아님을保証합니다.

本誌에掲載할수있는適合한內容内容으로서誌面이許諾하는한會員은 누구나研究論文을掲載하실수 있습니다.